

# 외국대학(교) 학생교류수강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

□ 제정 : 2009. 03. 02

제1조(목적) 외국대학(교)학생교류수강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은 대학간의 학부학생 교류 및 학점의 상호 인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자격) ① 본교에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대학에 재적 중인 자로서 해당 학위과정을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.

②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한다.

제3조(실지구분) 학생 교류 수강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로 구분한다.

제4조(수강허가) ① 지원자는 외국대학(교)학생학점교류 신청서, 추천서, 수업계획서,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자기소개서, 여권, 사진 2매를 국제협력처에 제출한다.

② 국제협력처장은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는다.

③ 총장의 재가를 받은 지원자는 본교에 입학 등록을 하고, 학적과에서 학번을 부여받는다.

제5조(정원)정규학기 수강 학생의 정원은 당해 학과(부)입학정원의 10분의 1이내로 하며, 계절수업 수강정원은 따로 정한다.

제6조(등록 및 수강료) ① 수강료는 본교 재학생의 당해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책정한다.

②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수강학생은 수강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

③ 수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,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7조(수강신청) 수강신청,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.

제8조(수강허가의 취소) 수강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강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9조(학점교류의 이수범위 및 이수제한) ① 수강학생의 이수범위는 학기나 방학 중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으로 한다.

② 학기 중에는 총 21학점, 계절 학기는 총 9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 할 수 있다.

제10조(취득학점의 처리) ①학기당 취득학점과 수강기간 동안 취득학점 및 수강기간은 대학의 기준에 따른다.

② 취득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③ 전항의 취득학점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시설물의 이용) 수강 학생은 도서관, 실험실습실, 기숙사 등의 교육·연구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.

제12조(기타) 본교 학생교류 수강자는 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09년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.